

# AI 시대 도서관의 TDM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관한 연구\*

## Copyright Exceptions for Library TDM in the Age of AI

정 경 희 (Kyoung Hee Joung)\*\*

### 목 차

- |                                    |                                     |
|------------------------------------|-------------------------------------|
| 1. 서 론                             | 4. TDM 예외 규정 도입을 제안한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 |
| 2. TDM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                | 5. 논의 및 제언                          |
| 3.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를 도입한 해외 입법 사례 | 6.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TDM 예외 규정 설계에 있어 도서관 면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FLA와 ICOLC 등 국제 도서관 단체가 발표한 성명을 분석하고,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를 도입한 EU DSM 지침, 프랑스,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예외 규정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의된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 여섯 건을 적용 주체, 이용 목적, 계약 배제 및 옵트아웃 허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계는 합법적 접근 자료에 대한 TDM 보장과 전자자료에 대한 TDM이 계약에 의하여 무력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해외 입법례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를 일반적 예외와 구분하여 도입하고 있었으나, 국내 개정안들은 어느 유형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에 대한 TDM 예외 주체 명시, 합법적 접근 개념의 명확화, 계약에 의한 예외 무력화 금지 규정 도입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eed for and appropriate direction of copyright exceptions for libraries in the design of TDM exceptions. To this end, it analyzes statements issued by international library organizations, including IFLA and ICOLC, and compares the legislative approaches of the EU DSM Directive, France, and Germany, which have introduced TDM exceptions fo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 key elements of such excep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six proposed amendments to Korea's Copyright Act introduced between 2017 and 2025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entities, purposes of use, exclusion by contractual terms, and whether opt-out was permitt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ibrary organizations called for TDM rights to be guaranteed for lawfully accessed works and for contractual terms not to override TDM involving electronic resources. While foreign legislation introduced TDM exceptions fo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separately from general TDM exceptions, none of the Korean amendment bills explicitly provided for an exception for libraries under either categor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explicitly designating libraries as eligible beneficiaries of TDM exceptions, clarifying the concept of lawful access, and introducing a provision prohibiting the circumvention of TDM exceptions through contractual terms.

키워드: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예외, 도서관, 저작권법, 인공지능

Text and Data Mining(TDM), copyright exception, Copyright Act of Korea, library, AI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

(khjoung@hansung.ac.kr / ISNI 0000 0004 6488 8643)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217-239,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217>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 목적과 범위

도서관이 오랫동안 수집하고 축적해온 인류의 지식과 지적유산은 AI가 학습하고 성능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AI 시대에 AI는 시민의 새로운 정보접근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AI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자원을 학습하였는가는 곧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연구, 교육, 학습에 활용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한편 ‘공유서재’ 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26). 2026년 출범한 국회기록원도 AI가 학습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지능형 아카이브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곽건홍, 2026). 이들 문화유산기관이 저작권이 소멸한 자료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자료도 AI 활용을 위하여 TDM에 사용할 수 있을까?

AI 개발 학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TDM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이다(박성호, 2025).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EU 2019/790(이하 EU DSM 지침) 제2조에 따르면 “패턴이나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로

된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동화된 분석 기술”을 말한다(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EU, 2019, DIRECTIVE (EU) 2019/790). TDM은 접근, 추출, 마이닝, 이용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류시원, 2023). 자료수집 이전의 접근단계는 아직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계약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접근이 통제될 수 있고, 추출단계는 분석용 데이터를 가공 및 복제하는 단계로서 대량 복제가 발생한다. 마이닝 단계는 기계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일시적 복제나 데이터 분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TDM의 과정은 저작권법상 복제와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를 AI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 TDM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및 이용의 성격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전자책 등 다양한 전자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에 대한 TDM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예외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이용 제한이 TDM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이미 2019년에 EU DSM 지침을 통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였고, 프랑스와 독일 등 EU 회원국들도 저작권법 내에 유사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 제정된 EU AI법(AI Act)은 AI 학습모델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EU DSM 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EU, 2024, Regulation(EU) 2024/689, 서문 105호).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은 2013년, 2020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TDM과 AI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다룬 성명을 발표하며 도서관에 대한 TDM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TDM 예외 규정 도입을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유산기관에 관한 사항은 어느 법안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DM에 대한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설계함에 있어 도서관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국제도서관 단체가 발표한 「TDM에 관한 IFLA 성명(IFLA Statement on Text and Data Mining)」(IFLA, 2013), 「도서관과 AI에 관한 IFLA 성명(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IFLA, 2020), 「저작권과 AI에 관한 IFLA 성명(IFLA Statemen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IFLA, 2025), 「라이선스 계약에서 AI에 관한 ICOLC 성명(ICOLC Statement on AI in Licensing)」(ICOLC, 2024) 문서에서 TDM 관련 사항을 분석한다.

둘째,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한 대표적인 법제로서 EU DSM 지침, 독일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G), BGBl. 2026 I Nr.157)」(이하 독일저작권법) 및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CPI), 2026)」(이하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을 분석한다. EU DSM 지침은 연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의 과학적 연구 목적 TDM을 대상으로 한 제3조와 일반적인 TDM에 적용되는 제4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법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TDM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각 법제에서 TDM의 적용 주체와 이용 목적, 허용 행위, 복제물의 보존, 계약에 의한 배제, 권리자 옵트아웃(opt-out), 기술적 조치 등을 주요 분석 요소로 삼았다.

셋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발의된 여섯건의 TDM 예외 규정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분석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박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0698, 발의일 2017.12.7,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하 박정 의원안), 제35조의3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신설, 2)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7440, 발의일 2021.1.15,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하 도종환 의원안), 제43조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신설, 3)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7990, 발의일 2022.10.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용호 의원안), 제35조의5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신설, 4)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37, 발의일 2023.6.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황보승희 의원안), 제35조의5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신설,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4685, 발의일 2023.9.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인영 의원안), 제35조의5 「교육, 조사, 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 등' 신설, 6)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8071, 발의일 2025.2.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태선 의원안), 제35조의 5 '교육·조사·연구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등' 신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도서관에 대한 TDM 예외 규정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 1.2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TDM 관련 저작권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TDM 면책 규정 도입을 위한 국내 현실을 파악하고 세밀한 입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이상용, 2021; 박혜민, 2023; 류시원, 2023; 이철남, 2023; 이수경, 2024; 강미영, 2025; 이일호, 2025), 둘째, TDM의 적용 주체와 이용 목적을 제한하되 그 이용 범위는 확대하여, 비영리적 이용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영리적 이용은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전제로 허용하는 EU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연구(이철남, 2024; 이원, 2025; 신용우, 2024), 셋째,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강조하고 권리자 보호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김경숙, 2021; 2025), 넷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가 TDM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연구(박성호, 2025; 이상호, 2025), 다섯째, 학문과 공익 목적의 TDM에는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상업적 목적의 TDM에는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할 것을 제안한 연구(최상필, 2022)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의 연구는 비영리적, 학술적 이용에 대한 TDM 예외를

제안하면서도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유산기관의 예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EU DSM 지침은 일반적인 TDM 예외와 별도로 도서관과 문화유산기관이 수행하는 TDM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EU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국내 연구에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의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TDM 예외 규정의 도입을 제안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EU DSM 지침 및 독일과 프랑스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도서관에 대한 TDM 예외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해외에서는 EU DSM 지침의 문화유산기관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짚은 연구들이 일부 있었다. 이들 연구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의무적 예외 도입이 문화유산기관과 연구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분석하거나(Lehmann & Sichani, 2025), 도서관의 라이선스 환경에 존재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연구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Geiger et al., 2018), TDM 예외 규정이 도서관 본연의 사명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법적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Izquierdo, 2022).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여 TDM 면책 규정에서 '합법적 접근 개념'을 확장하고, 목록 데이터 구축 등 도서관의 자원관리 전반으로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연구도 있다(Westenberger & Farmaki, 2025).

## 2. TDM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

### 2.1 IFLA의 성명서

IFLA는 2013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TDM과 AI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3년의 「TDM에 관한 IFLA 성명」(IFLA, 2013b)은 2011년 영국에서 발표된 하그리브스 지적재산권 및 성장보고서가 TDM 촉진을 위해 저작권 예외 조항 도입을 권고하고, TDM이 혁신과 새로운 지식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흐름 속에서 발표되었다(IFLA, 2013a). 이 성명은 TDM을 ‘읽을 권리’로 이해한다. 즉, TDM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독서 행위를 컴퓨터로 확장한 ‘컴퓨터 기반 읽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FLA는 정보 접근 자유 원칙과 정보가 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적 복지에 필수적인 방식으로 제한 없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규범이 TDM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을 통하여 TDM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TDM의 주체에 연구자, 연구기관, 도서관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이용자를 포함하고, 객체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2020년에 채택한 「도서관과 AI에 관한 IFLA 성명」(IFLA, 2020)은 도서관이 AI 기술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이 성명은 TDM 저작권 예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저작권법에 TDM 예외가 도입되어

야 도서관이 본연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AI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IFLA FAIFE, 2020).

2025년에 발표한 「저작권과 AI에 관한 IFLA 성명」은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저작권 업계와 주요 AI 기업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 도서관이 중시하는 가치인 정보 접근성 향상, 교육, 연구, 문화 참여 증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서 만들어졌다(IFLA, 2025a). 이 성명은 도서관이 합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취득한 콘텐츠에 대한 TDM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AI 학습시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폭 넓은 자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권리자와 전자자원 공급업체는 도서관 이용자의 AI 활용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작권법상 적용 가능한 예외를 차단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서 안 된다는 것, FAIR 원칙과 CARE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라이선스를 통해 AI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장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약조항에 의한 AI 활용 무력화에 대해서는 ICOLC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IFLA, 2025b). 2025년 IFLA의 성명은 도서관, 정부, 저작권자가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AI 개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AI 활용과 TDM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이다(Wyber, 2025).

### 2.2 국제도서관콘소시엄협의회(ICOLC) 성명

2022년 말 ChatGPT 이용이 확산하면서 전자자료 공급업체들이 도서관 및 컨소시엄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AI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AI 활용 범위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ICOLC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오픈엑세스 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도서관 컨소시엄이 전자자료 라이선스 협약에서 지켜야 할 AI 조항과 관련한 원칙인 「라이선스 계약에서 AI에 관한 ICOLC 성명」을 발표하였다(ICOLC, 2024). 이 성명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AI 조항은 비상업적 연구, 교육, 학습 및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한 AI 활용을 허용해야 하며, 이용자의 이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콘텐츠를 정당한 이용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ICOLC, 2024).

이 성명은 라이선스 협상 실무에서 전자자료 제공업체의 AI 이용 제한 시도를 통제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으로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전자자료 제공업체의 AI 이용제한 조항 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EU 입법례와 같이 도서관의 TDM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권리 제한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계는 TDM과 저작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IFLA는 TDM을 '컴퓨터 기반 읽기'로 규정하며, 합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접근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자가 별도의 허락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 예외를 요구하였다. ICOLC는 전자자료 계약시 AI

조항이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의 TDM 면책 사항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3.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를 도입한 해외 입법 사례

#### 3.1 EU DSM 지침

2019년에 도입된 이 지침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참여자 간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는데(임한규, 2020), 이후 2024년에 통과된 EU 'AI Act'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Lehmann & Sichani, 2025). 이 지침에는 TDM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이용 유형에 대한 예외와 제한, 비유통 저작물,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의 보존용 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U DSM 지침의 TDM 관련 규정은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TDM'(제3조)과 'TDM 예외 또는 제한'(제4조)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3조는 문화유산기관과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을, 제4조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제3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두 조항을 적용주체와 객체, 이용방식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볼 것이다.

##### 3.1.1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TDM

###### (1) 적용 주체

EU DSM 지침 제3조에 따라 TDM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는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

관 및 이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다(서문 14호). 여기서 문화유산기관이란 “일반에게 접근이 허용된 도서관 또는 박물관, 아카이브, 영상·음성유산기관”(제2조 3항)이다. 이들 기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연구기관이란 “대학(그 부속 도서관을 포함), 연구기관 또는 그밖에 과학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의 수행을 수반하는 교육 활동을 주요 목표로 하는 모든 기관”(2조 1항)이다. 이때 연구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거나 모든 이윤을 과학 연구에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회원국이 인정한 공익적 임무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객체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TDM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이다(제3조 1항). “합법적 접근”이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또는 계약(예: 구독)이나 그 외 합법적 수단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서문 14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기관이 자료를 구독하는 경우, 해당 구독의 적용을 받는 소속 기관은 합법적 접근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합법적 접근에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서문 14호).

#### (3) 이용 목적 및 방식

위의 두 주체라 하더라도 TDM을 위한 목적은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제3조 1항). 여기서 ‘과학 연구’라는 용어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서문 12호). TDM을 위하여 복제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실질적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 또는 언론출판물 등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복제 또는 공중전송할 수 있다. 이때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기관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추어 복제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검증을 포함한 과학 연구를 위하여 보관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 (4) 권리자의 기술적 조치 제한

권리자는 저작물이 저장된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기관의 TDM 자체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제3조 제4항).

#### (5) 계약에 의한 배제

제3조에서 규정된 예외 사항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제7조 제1항). 구독이나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전자자원 제공업체와 도서관의 계약 사항에 TDM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제7조 제1항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다. TDM을 배제하는 이러한 계약이 연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배경이다(서문 10호).

#### (6) 권리자 옵트아웃

TDM을 수행하는 연구 및 문화유산기관에 대하여 권리자는 권리 유보 즉, 옵트아웃을 할 수 없다(제4조 제4항). 이는 일반 이용을 위한 TDM의 경우 권리자가 기계가독형 수단으로 권리 유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제4조 제3항)과

비교된다. 이는 연구 및 문화유산기관의 공익적 활동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1.2 일반 이용을 위한 예외

EU DSM 제4조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TDM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권리 유보를 하지 않은 때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기계가독형 수단에 의한 권리 유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복제 및 추출한 결과물은 TDM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일반적인 TDM 예외는 권리자가 TDM 사용 제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와 다르다.

EU DSM 지침 제3조와 제4조를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제3조는 TDM의 적용 주체와 이용 목적을 매우 좁게 제한하되, 권리자의 옵트아웃이나 계약에 의한 배제를 할 수 없도록 한 강행규정으로 연구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이와 달리 일반적 이용을 위한 TDM 예외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자까지 적

용 대상을 확대하되, 권리자의 옵트아웃과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허용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 3.2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프랑스는 2021년 11월 EU DSM 지침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법 L122-5-3조를 신설하여 과학 연구 목적과 일반 이용을 위한 TDM 예외 사항을 정하였다.

### 3.2.1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

#### (1) 적용 주체

연구기관,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또는 영화, 시청각, 음향유산을 보유한 기관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이 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민간단체와 비영리 파트너십을 통하여 TDM 수행이 가능하다. EU DSM 지침 제3조와 달리 연구기관, 도서관 등과 공익 목적의 파트너십을 맺은 사람이나 기관도 주체에 포함시켜 TDM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원, 2025). 단, TDM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회사, 주주, 파트너가 TDM 결과에 대한 특

<표 1> EU DSM 지침 제3조와 제4조 비교

| 구분       | 제3조                | 제4조               |
|----------|--------------------|-------------------|
| 조항 명칭    |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TDM   | TDM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  |
| 적용 주체    | 연구/문화유산기관 및 기관 소속원 | 모든 이용자(영리 포함)     |
| 목적 제한    | 과학적 연구 목적          | 목적 제한 없음          |
| 복제물 보존   | 연구검증, 과학 연구용 보관 가능 | 최소, 필요 범위 내 보관 가능 |
| 강행성      | 강행 규정              | 비강행(옵트아웃 가능)      |
| 계약 배제    | 계약으로 배제 불가         | 계약으로 배제 가능        |
| 기술적 보호조치 | 최소한의 보안 조치만 허용     | 권리자의 보호조치 허용      |
| 정책적 성격   | 연구 인프라 보호          | 시장 균형 조정          |

권적 접근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L122-5-3조 2항).

#### (2) 이용 목적, 객체, 허용 행위

이러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 목적은 과학 연구 목적으로 제한된다. TDM을 위해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제작할 수 있다. TDM 과정에서 제작된 디지털 사본과 복제물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여 보관하며, 연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L122-5-3조 2항).

#### 3.2.2 일반 이용을 위한 예외

권리자가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특히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콘텐츠의 경우 기계가독형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TDM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L122-5-3조 3항). 또한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규정과 달리 일반 이용의 경우 TDM 과정이 완료되면 복제물을 파괴하도록 정하고 있다(L122-5-3조 3항).

### 3.3 독일 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은 제44b조 'TDM'에서 일반적인 이용을 정하고 있고, 문화유산기관과 연구기관, 비상업적 목적의 개별 연구자의 TDM에 대해서는 제4관 '강의, 학술 및 기관의 적법한 이용'의 제60d조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TDM'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용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가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

에 적용되므로 먼저 일반적인 이용을 검토한다.

#### 3.3.1 일반 이용을 위한 예외

제44b조는 TDM을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제44조 (1)항). 단, TDM 수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을 때 그 사본을 삭제해야 한다(제44b조 (2)항). 다만, 이러한 사용은 권리자가 권리 유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유보는 기계가독형인 때에만 유효하다(제44b조 (3)항). 즉, 제44b조는 권리자가 TDM에 대한 권리 유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누구라도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을 TDM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3.3.2 문화유산기관

##### (1) 주체

제60d조에 따르면 문화유산기관, 연구기관,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개별 연구자는 과학 연구 목적으로 TDM을 수행하기 위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제60d조 (1)항). 여기서 문화유산기관이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박물관, 영화 또는 오디오 유산 분야의 아카이브나 기관"을 말한다(제60d조 (3)항의 1). 도서관과 박물관에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지만, 영화나 오디오 유산 분야의 아카이브나 기관에는 이러한 조건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문화유산기관과 더불어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고, 모든 이익을 과학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국가의 위임에 따른 공익 목적의 대학, 연구소,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타 기관도 TDM을 위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제60d조 (2)항). 그러나 이러한 연구 기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연구 결과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연구기관은 이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제60d조 (2)항).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개별 연구자도 TDM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다(제60d조 (3)항의 2).

#### (2) 객체, 이용 목적, 허용 행위

일반적인 이용을 위한 TDM에서와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이용 목적은 과학 연구로 제한된다. TDM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제60d조 (1)항), 제작된 복제물은 공동 연구를 위해 특별히 한정된 사람들의 모임, 연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3자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나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제60d조 (4)항). 즉, 도서관이 TDM을 위하여 제작한 복제물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한정된 연구자 그룹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 (3) 복제물 보관과 기술적 조치

TDM이 허용된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은 TDM용 복제물이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간에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는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위한 TDM용 복제물의 제공을 기존의 연구자료나 정보자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위로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저작권자는 TDM용 복제로 인해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무결성이 위협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60d조 (6)항).

#### (4) 계약에 의한 무력화 금지

독일 저작권법 제60g조는 '적법한 이용과 계약상 이용권한'을, 제60h조는 '적법한 이용의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60g조의 (1)항은 TDM 예외(제60d조) 뿐만 아니라 독일 저작권법 제4관 '강의, 학술 및 기관의 적법한 이용'(제60a조 ~ 60f) 전체에 대하여 이용권자에게 불리하도록 적법한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합의에 대해서 권리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써 EU DSM 지침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기관에 부여된 TDM 사용권리가 계약으로 무력화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학술적 연구 목적을 위한 TDM용 복제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0g조).

### 3.4 비교 및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EU DSM 지침과 프랑스 및 독일의 저작권법은 TDM 예외규정을 일반적인 이용과 연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을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DM 예외 규정과 다르지 않지만, 저작권자의 옵트아웃을 허용하지 않는 강행규정이라는 점, 계약에 의해 이러한 예외가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일반적인 예외 규정에는 적용되

지 않는 특별한 내용으로서 특히 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계약의 TDM 배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DM을 위하여 생성한 복제물 처리에 대해서도 즉시 삭제보다 일정한 제한 조치 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유산기관의 지식보존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허용을 통하여 권리자를 상대적으로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과 달리, 문화유산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TDM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의 공공적 가치와 지식 확산 기능이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 4. TDM 예외 규정 도입을 제안한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

2017년부터 2025년까지 TDM 관련 예외 규정을 저작권법에 신설하자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도종환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되었다. 국내 입법안의 흐름은 대체로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일반적인 TDM을 허용하는 안으로 적용 주체를 특별

〈표 2〉 EU DSM 지침,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독일 저작권법의 TDM 예외 규정 비교

| 구분     | EU DSM 지침                  |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                          | 독일 저작권법                        |                   |
|--------|----------------------------|-------------------|------------------------------|--------------------------|--------------------------------|-------------------|
| 조항 명칭  | 과학 연구를 위한 TDM 예외 (제3조)     | 일반 TDM 예외 (제4조)   | 과학연구 목적 TDM 예외 (L122-5-3 II) | 일반 TDM 예외 (L122-5-3 III) | 과학연구 목적 TDM 예외 (제60d조)         | 일반 TDM 예외 (제44b조) |
| 적용 주체  | 연구/문화유산기관, 그 소속원           | 모든 이용자 (영리 포함)    | 공공, 비영리 연구/문화유산기관, 비영리 파트너십  | 누구나                      | 연구/문화유산기관, 민간 파트너십 비상업적 개인 연구자 | 누구나               |
| 목적 제한  | 과학적 연구 목적                  | 제한 없음             | 과학적 연구 목적                    | 제한 없음                    | 과학적 연구 목적                      | 제한 없음             |
| 객체     | 합법적 접근 가능 저작물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허용 행위  | DB 전부/일부 추출 및 재이용 일시/연구 복제 | 복제 · 추출 · 분석      | 디지털 사본, 복제물 제작               | 복제 · 추출 · 분석             | 디지털 사본, 복제물 제작 제3자 제공          | 복제 · 분석           |
| 복제물 보존 | 연구용 보관 보안 갖출 것             | 최소, 필요 범위 내 보관 가능 | 연구용 보관 보안 갖출 것               | 분석 종료 후 삭제 원칙            | 연구용 보관 보안 갖출 것                 | 필요 범위 내 보관 후 삭제   |
| 계약 배제  | 계약으로 배제 불가                 | 가능                | 명시 없음                        | 가능                       | 이용권자에게 불리한 합의 불가               | 가능                |
| 옵트 아웃  | 불가                         | 가능                | 명시 없음                        | 가능                       | 명시 없음                          | 가능                |
| 기술적 조치 | 최소한의 보안조치만 허용              | 권리자 보호조치 허용       | 필요한 보안조치 가능                  | 권리자 보호조치 허용              | 필요한 보안조치 가능                    | 권리자 보호조치 허용       |

히 제한하지 않고 TDM용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는 접근이다. 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2023년 이후 제안된 교육, 연구 목적에 대한 예외형 발의안은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한정하여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TDM을 허용하려는 접근이다.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해외 입법례의 분석틀인 TDM 규정 적용 주체, 이용 목적, 적용 객체, 허용 행위, TDM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복제물의 보관 허용, 제3자 위탁 가능여부, 권리자의 옵트아웃 권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예외 무력화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6건의 개정안을 분석한다.

#### 4.1 일반적 예외를 다룬 법안들

박정 의원안은 정보분석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안은 컴퓨터로 저작물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만들어진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법안은 복제의 주체나 이용목적, 대상 자료, 복제물 보관, 옵트아웃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복제 대상 자료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TDM을 허용하는 안이다.

도종환 의원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공정한 권익 균형을 찾고자 한

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정보분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이후의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으나 이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그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안은 적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권리자의 옵트아웃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도 명시도 없다.

이용호 의원안은 저작물을 대량 정보분석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안도 도종환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하여 추가의 정보나 가치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복제 대상 저작물의 요건으로 ‘적법한 접근’을 제시한 점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도종환 의원안과 동일하다. 다만, 이 안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분석 결과물을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 또는 창

작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안들과 다르다. 이 안은 일반적 이용을 염두에 둔 TDM 예외 규정이며, 동시에 TDM 결과물에 관해서는 연구나 교육 등 비상업적 목적, 창작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연구나 교육 목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상업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창작 목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TDM 결과물에 대해서도 매우 폭넓은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안은 이용호 의원안과 유사하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안은 TDM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안들에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 향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접근, 제작된 복제물에 대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은 허용하면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권리침해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종환 의원안과 유사하다.

#### 4.2 교육·연구 목적에 대한 예외를 다룬 법안들

이인영 의원안은 EU DSM 지침 등 해외에서 TDM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 보장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안은 분석 대상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 접근 요건을 제시한 것은 앞의 안들과 동일하나 TDM을 위한 복제의 주체를 대학과 연구기관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제한하고, 복제의 목적도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제작한 복제물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권리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조상으로는 EU DSM 지침 제3조와 가장 유사하나 문화유산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으로 이 예외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이이다.

김태선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량 정보분석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이나 조사, 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TDM을 허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안은 이인영 의원안과 거의 유사하며, 차이점은 적용 주체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하고, 이용 목적에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 이외에 ‘공익적 목적’을 추가하였다는 데 있다. 이인영 의원안과 다르게 비영리 민간단체를 복제의 주체에 명시하였으나 문화유산기관이나 계약에 의한 무력화 금지에 대한 사항은 없다.

#### 4.3 비교 및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21대 국회에서 도

중환 의원안을 시작으로 총 4건의 TDM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저작권자 측의 반대 등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신용우, 2024). 그동안 제안된 법안들은 TDM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AI 산업을 진흥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 단체들은 영리적 이용과 비영리적 이용을 구분하고,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신용우, 2024). 반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및 심의자료에서 국내 도서관계가 TDM 입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안된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크게 일반적 예외형과 교육·연구 목적 제한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예외형에는 박정, 도종환, 이용호, 황보승희 의원안이 포함되며, 적용 주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정보분석 자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저작물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단순히 복제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출발하여, 합법적인 접근 요건, 복제물 보관, 전송 허용 등이 추가되었고, 이용호 의원안은 결과물의 이용범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예외형 법안들은 산업 진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권리자 보호를 목표로 하여 EU DSM 지침 제4조의 일반적 TDM 예외와 유사하지만,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연구 목적 제한형인 두 개 안은 적용 주체를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이용 목적도 교육·조사·연구 등 비

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을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한 EU DSM 지침 제3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이 수행하는 TDM의 특수성, 전자자료 라이선스 및 계약에 의한 예외의 배제 가능성, 합법적 접근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표 3〉 참조). 따라서 향후 국내 TDM 입법 논의에서는 TDM의 허용 여부와 범위뿐만 아니라, 실제로 TDM을 수행하는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이 저작권 예외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논의 및 제언

### 5.1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 필요

국내 TDM 관련 법안은 적용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형 법안과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적용 주체를 한정하는 제한형 법안으로 나뉜다. 두 유형의 어느 법안에서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을 TDM 예외 적용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EU DSM 지침과 프랑스, 독일의 저작권법 상 TDM 예외 규정에서 연구기관과 더불어 문화유산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문화유산기관 중에서 특히 도서관은 저작물이 대부분인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을 지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 국가대표 도서관

〈표 3〉 국내 TDM 예외 규정 도입 제안 저작권법 개정안 비교

| 구분     | 일반 예외형             |                           |                         |                       | 교육·연구목적 제한형                          |                           |
|--------|--------------------|---------------------------|-------------------------|-----------------------|--------------------------------------|---------------------------|
|        | 박정 의원안             | 도종환 의원안                   | 이용호 의원안                 | 황보승희 의원안              | 이인영 의원안                              | 김태선 의원안                   |
| 제안 조항  | 제35조의3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제43조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 제35조의5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 좌동                    | 제35조의5 교육·조사·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 좌동                        |
| 입법 목적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AI·빅데이터 산업의 법적 안정성, 권리 균형 | 산업계 예측가능성 제고, 권리자 보호    | AI 활용 허용범위와 침해 경계 명확화 | 데이터산업, 권리자 보호                        | 공익·비영리 TDM 허용, AI 산업 발전   |
| 적용 주체  | 제한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대학·연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대학·연구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         |
| 이용 목적  | 제한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                   |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 |
| 적용 객체  | 없음                 | 적법하게 접근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허용 행위  | 복제                 | 복제·전송                     | 좌동                      | 복제·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 복제·전송                                | 좌동                        |
| 복제물 보관 | 규정 없음              | 필요한 한도 보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기술보호조치 | 없음                 | 좌동                        | 복제방지조치 등                | 없음                    | 복제방지 및 보안조치                          | 좌동                        |

제3자제공, 권리자 옵트아웃, 계약에 따른 배제,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들은 국내에서 발간된 저작물을 망라하여 수집 및 보존하고 정보기술 변화에 맞추어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들 도서관은 그동안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상당수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은 대량의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전자책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들은 TDM을 통한 AI 학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EU DSM 지침의 서문 8호와 13호는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유산기관이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 보존,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이 직접 TDM을 수행하거나 연구자들의 분석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

산기관을 단순한 자료 보관자가 아니라, 디지털 연구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IFLA의 TDM 성명은 TDM을 컴퓨터 기반의 읽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매하기보다 도서관이 소장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에 이용한다. 따라서 TDM의 법적 허용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도서관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자에게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서관에 대한 명시적 예외가 부재하면, 도서관이 소장 및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연구자에게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게 남는다(EU DSM 지침 서문 8호).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가 필요하다(Geiger et al., 2018).

이는 그동안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저작권법의 일관성 있는 태도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도서관은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을 담고 있는 저작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또 다른 지식의 생산과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접근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해왔다. 기술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관내 전송이나 고아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공개 등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도서관이 수행하는 AI 학습을 위한 TDM은 이용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의 지식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편향성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대표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은 특정 분야나 관점에 편향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공공 지식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TDM은 AI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방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객관적이며 공정한 발견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것이다.

## 5.2 계약에 의한 예외 무력화와 전자자료 라이선스 문제

구독형 학술 DB는 AI 학습을 위한 TDM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동안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도서관은 고가의 대형 학술 DB를 DB 제공기관과 구독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 이용자가 읽고 다운로드하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소속기관 연구자가 TDM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DB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은 법률 규정보다 계약조건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도서관과 학술 DB 제공업체간의 구독계약은 이용자 범위, 다운로드 허용량, 자동화 접근 여부, API 사용, TDM 허용 여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상 TDM 예외가 존재하더라도 계약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현실에서는 예외 규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EU DSM 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문화유산기관 대상 TDM 예외에 반하는 계약조항은 무효가 되도록 정하였다. 독일 역시 교육·연구 관련 예외에 대하여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025년 IFLA의 AI 성명과 2024년 ICOLC의 성명은 모두 구독계약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AI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연구 목적용 TDM 예외를 제안한 이인영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은 계약에 의한 예외의 무력화 금지 조항이 없다. 이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독립적 예외가 설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라이선스 제한 문제가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도서관은 이미 상업 출판사와 데이터 제

공업체가 제시하는 TDM 제한 조항에 직면하고 있다(Samberg et al., 2024). 대량 다운로드 금지, 로봇 접근 차단, 사전 승인 요구, 생성형 AI 학습 목적 이용 금지 등의 조건은 연구자들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입법은 단순히 TDM을 허용한다고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도서관이 계약을 통하여 접근할 권리가 있는 전자자료에 대하여 교육·연구 목적의 TDM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3 합법적 접근 개념과 실무상 불확실성

해외의 사례와 국내 법안은 모두 TDM 대상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이는 무단 복제나 불법 유통경로로 확보한 자료를 이용한 TDM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Westenberger & Farmaki, 2025). TDM 예외 규정 도입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가에 따라 합법적 접근의 범위는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신용우, 2024). EU DSM 지침 서문 14호는 오픈엑세스 정책, 권리와 도서관 간의 구독계약을 모두 합법적인 접근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고, 기타 합법적인 수단에 기반한 콘텐츠 접근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도서관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나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엑세스 논문, 단행본, 보고서나 대학도서관이 계약을 체결한 DB에 포함된 자료 등이다. 그렇

다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등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접근도 합법적 접근에 포함되는 것인지,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한 파일까지 허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 저작권법 제31조 단서는 도서관이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요구한 복제물을 제공할 때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소장한 자료는 보존용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이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보존용 또는 관내 열람용으로 디지털화한 자료는 TDM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가? 현재의 제31조는 디지털화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존 또는 관내 열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TDM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TDM 예외에서 합법적 접근은 제31조에 근거하여 보존용이나 관내 열람용으로 디지털화한 자료에 대한 접근도 포함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

### 5.4 도서관과 협력하는 회사, 목적 제한의 문제

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 자료에 대한 보존과 검색 및 이용에 필요한 처리는 대부분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러한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지식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TDM 과정

에서는 데이터 소유자인 도서관에서 인프라를 보유한 협력기관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Westenberger & Farmaki, 202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 규정에는 도서관이 개인이나 민간단체와 비영리 파트너십을 맺어 TDM을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TDM 예외 규정이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형으로 도입될 경우 도서관이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여 TDM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되, 이 협력의 결과물은 도서관의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TDM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회사, 주주, 파트너가 TDM 결과에 대한 특권적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L122-5-3조 2항).

## 6. 결 론

본 연구는 AI 시대 도서관에 대한 TDM 저작권 예외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네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IFLA가 2013년, 2020년, 2025년에 발표한 성명과 ICOLC가 2024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TDM과 관련한 도서관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계는 합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취득한 자료에 대한 TDM 활용 보장, 계약에 의한 TDM 제한의 금지, 공공 목적의 TDM 우선 보호,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 방지를 위한 폭넓은 자료 접근이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IFLA는 TDM

을 '컴퓨터 기반 읽기'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TDM 수행을 도서관 본연의 정보접근 제공 기능의 연장선으로 선언하였고, ICOLC는 라이선스 계약이 정당한 이용자의 합법적 접근을 통한 TDM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TDM 예외를 도입한 EU DSM 지침,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독일 저작권법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에 대한 예외 규정에서 도출되는 핵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들 입법례에서 문화유산기관을 위한 TDM 예외는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배제하고 계약으로도 무력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문화유산기관의 TDM을 단순한 이용자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프라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해외 입법례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의된 TDM 예외 규정 도입 개정안들을 검토하였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의된 여섯 건의 법안은 적용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적 예외형과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주체를 한정한 목적 제한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유산기관을 독립된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권리자의 계약에 의한 예외 무력화를 금지하는 강행규정도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해외 입법례가 문화유산기관에 대하여 일반적 이용과 명확히 구분되는 강행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었다.

넷째,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도서관에 대한 TDM 예외 규정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은 저작물의 대량 수집, 보존, 서비스 제공을 통해 AI 학습을 위한 TDM의 실

질적 출발점임에도, 국내 법안에서는 그 지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도서관을 독립적인 예외 규정 주체로 명시할 것, 둘째,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보존과 관내열람 목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가 포함되도록 합법적 접근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 셋째, 계약에 의한 예외 무력화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도입할 것, 넷째, 도서관이 외부 협력기관과 결합하여 TDM을 수행하되 그 결과물의 이용 목적을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국내의 TDM 입법 논의는 AI 산업 진흥과 데이터 활용 촉진이라는 산업적 관점에

치우쳐 있었을 뿐, 연구와 지식생산의 기반인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유산기관의 역할과 지위는 검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해외 입법례가 일반적 TDM 예외와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예외를 분리하여 후자를 강행규정화한 것은, 문화유산기관의 TDM이 시장 참여자 간 이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식 인프라를 지탱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저작권법 개정 논의도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유산기관을 AI 시대 연구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행위자라는 인식 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미영 (2025).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법학연구, 66(1), 193-218. <http://doi.org/10.35275/pnulaw.2025.66.1.007>
- 곽건홍 (2026). 기록의 마침표: 민주주의의 출발점. 월간 국회도서관, 541, 19-22.
- 곽혜민 (2023).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 정비에 대한 소고: AI의 데이터 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15(1), 43-66.
- 국립중앙도서관 (202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55239&schBcid=normal0302>
- 김경숙 (2021).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 기술적보호조치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검토. 경영법률, 31(3), 111-141.
- 김경숙 (2025).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계간 저작권, 38(2), 5-54. <https://doi.org/10.30582/kdps.2025.38.2.5>
- 류시원 (2023).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형성절차에 관한 제언. 법제, 704, 109-146. <http://doi.org/10.23028/moleg.2024.704..004>
- 박성호 (2025).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66(1), 165-220. <https://doi.org/10.22850/slj.2025.66.1.165>

- 신용우 (2024). 인공지능 윤리와 저작권의 규제체계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이상용 (2021).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65, 1-54. <https://doi.org/10.18215/kwlr.2021.65..1>
- 이상호 (2025). AI 학습과 생성: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연구. 법학연구, 33(3), 201-233.
- 이수경 (2024).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 재산법연구, 41(2), 35-65.  
<http://doi.org/10.35142/prolaw.41.2.202408.002>
- 이원 (2025).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EU·프랑스의 TDM 규제 분석과 시사점. 계간 저작권, 38(3), 75-105. <https://doi.org/10.30582/kdps.2025.38.3.75>
- 이일호 (202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 저작권-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계간 저작권, 38(1), 129-183. <http://doi.org/10.30582/kdps.2025.38.1.129>
- 이철남 (2023). 생성 AI 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과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 과학기술법연구, 29(3), 33-70. <https://doi.org/10.32430/ilst.2023.29.3.33>
- 이철남 (2024).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저작권정책연구 2024-02). 한국저작권위원회.
- 임한규 (2020).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70, 1-8.
- 최상필 (2022).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계간 저작권, 35(1), 59-91. <http://doi.org/10.30582/kdps.2022.35.1.59>
- Geiger, C., Frosio, G., & Bulayenko, O. (2018). The Exception for Text and Data Mining (TDM) in the Proposed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Legal Aspects(CEIPI Research Paper No. 2018-02). 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 <http://dx.doi.org/10.2139/ssrn.3160586>
- IFLA (2013a). IFLA publishes statement on libraries and text and data mining. Available: <https://www.ifla.org/news/ifla-publishes-statement-on-libraries-and-text-and-data-mining/>
- IFLA (2013b). IFLA statement on text and data mining.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files/assets/clm/statements/iflastatement\\_on\\_text\\_and\\_data\\_mining.pdf](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files/assets/clm/statements/iflastatement_on_text_and_data_mining.pdf)
- IFLA (2020). Anniversary of the EU DSM directive. Available: <https://www.ifla.org/news/anniversary-of-the-eu-dsm-directive/>
- IFLA (2025a). IFLA statemen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3927>
- IFLA (2025b). Realizing potential, supporting users: IFLA statemen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vailable:

- [https://www.ifla.org/news/realising-potential-supporting-users-ifla-statement-on-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utm\\_source=chatgpt.com](https://www.ifla.org/news/realising-potential-supporting-users-ifla-statement-on-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utm_source=chatgpt.com))
- IFLA, FAIFE (2020).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1646>
- 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 (2024). ICOLC statement on AI in licensing. Available: <https://icolc.net/statements/icolc-statement-ai-licensing>
- Izquierdo, H. A.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xt and data mining: future rules for libraries? In Coates, J., Owen, V., & Reilly, S. eds. *Navigating Copyright for Libraries: Purpose and Scope*. Berlin: De Gruyter Saur, 497-540.
- Lehmann, J. & Sichani, A. M. (2025). A position paper on AI and copyrights in cultural heritage and research (EU and UK). *Journal of Open Humanities Data*, 11(1), article No. 25. <https://doi.org/10.5334/johd.290>
- Samberg, R., Vollmer, T., & Teremi, S. (2024). Fair use rights to conduct text and data mining and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are essential for UC research and teaching. Available: <https://osc.universityofcalifornia.edu/2024/03/fair-use-tdm-ai-restrictive-agreements/>
- Westenberger, P. & Farmaki, D. (2025).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ultural heritage research: the challenges in UK copyright law and polic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15, 14009. <https://doi.org/10.3389/ejcmp.2025.14009>
- Wyber, S. (2025) Choose carefully: AI regulation, copyright, and the IFLA statement. IFLA WLIC 2025, Astana, Kazakhstan.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rest/api/core/bitstreams/f5d35cf0-f669-4e1c-8eda-54e9ce46fed4/conten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ang Pil (2022). Copyright issues and legislation on TDM for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g data. *Copyright Quarterly*, 35(1), 59-91. <http://doi.org/10.30582/kdps.2022.35.1.59>
- Gwak Geon-hong (2026). The full stop of records: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cy. *National Assembly Library*, 541, 19-22.
- Gwak, Hye Min (2023).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focusing on AI's use of data.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15(1), 43-66.

- Kang, Miyoung (2025). Copyright infringement following the use of generative AI and crimin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Law Reviews*, 66(1), 193-218.  
<http://doi.org/10.35275/pnulaw.2025.66.1.007>
- Kim, Kyungsuk (2021). A critical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on TDM: comparative legal review from the aspect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31(3), 111-141.
- Kim, Kyungsuk (2025). Generative AI and copyright issues: cases and analysi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pyrightability. *Copyright Quarterly*, 38(2), 5-54.  
<https://doi.org/10.30582/kdps.2025.38.2.5>
- Lee, Chul-nam (2023).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data training for generative AI and directions for copyright law amendments related to TDM. *Hannam Journal of Law & Technology*, 29(3), 33-70. <https://doi.org/10.32430/ilst.2023.29.3.33>
- Lee, Chul-nam (2024). A Study on Improving Copyright Systems for AI. Korea Copyright Commission.
- Lee, Il Ho (2025). Should the copyright paradigm shift in the era of generative AI?: a critical review of AI-copyright debates. *Copyright Quarterly*, 38(1), 129-183.  
<http://doi.org/10.30582/kdps.2025.38.1.129>
- Lee, Sang-Ho (2025). AI training and generation: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fair use: focusing on U.S. copyright case law.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3(3), 201-233.
- Lee, Sangyong (2021). Non-contractual use of data: focusing on limitations to copyright for text and data mining. *Kangwon Law Review*, 65, 1-54.  
<https://doi.org/10.18215/kwlr.2021.65..1>
- Lee, Soo-kyoung (2024).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e Journal of Property Law*, 41(2), 35-65. <http://doi.org/10.35142/prolaw.41.2.202408.002>
- Lee, Won (2025). AI learning data and copyright: analysis of EU and France's TDM regu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Copyright Quarterly*, 38(3), 75-105.  
<https://doi.org/10.30582/kdps.2025.38.3.75>
- Lim, Han-gyu (2020). Key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Foreign Legislation: Trends and Analysis*, 70, 1-8.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6). 2026 major business plan.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55239&schBcid=normal0302>

- Park, Seong-Ho (2025). A study on burden of proof & averment in copyright infringement suit in the case of generative AI. *Seoul Law Journal*, 66(1), 165-220.  
<https://doi.org/10.22850/slj.2025.66.1.165>
- Ryu, Shiwon (2023). Recommendations on copyright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on*, 704, 109-146. <http://doi.org/10.23028/moleg.2024.704..004>
- Shin, Yong-woo (2024). A study o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copyright.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